

할부금융 신청서 / 약정서(CV)



할부금융 약정서

2018. 04. 30 개정

대한민국정부
인 지 세
0,000 원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2014년15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귀중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할부금융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의 여신거채기본약관을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난 후 아래와 같이 자동차건설기계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 구분 | 제조사 / 판매사 | 물건명 (모델명) | 물건 가격 | 물건별 할부금융자금 |
|------|-----------|-----------|-------|------------|
| 차량 | | | 원 | 원 |
| 특장속 | | | 원 | 원 |
| 특장 1 | | | 원 | 원 |
| 특장 2 | | | 원 | 원 |
| 특장 3 | | | 원 | 원 |

| 할부금융자금 | 이자율 | 할부기간 | 월할부금 | 유예금 | 상환방식 |
|----------------|---|--|----------------------------------|----------------------------------|---|
| 차량 | 원 연 % | 총 개월 (거치: 개월) | 원 | 원 | 1.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2. 거치 후 원리금 균등 + 유예금 만기상환 <input type="checkbox"/> |
| 특장 | 원 연 % | 총 개월 (거치: 개월) | 원 | 원 | 1.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2. 거치 후 원리금 균등 + 유예금 만기상환 <input type="checkbox"/> |
| 물건할부금융총액 ① | 원 | 거치이자 납입방식 거치기간 매월납입 <input type="checkbox"/> 거치기간후 월할부금에서 우선납입 <input type="checkbox"/> | 자면세상품(영양+3%, 법정최고리(2%이하)) 연 % | 구매자수수료 | 실제연요율 |
| 월할부금 ()회~()회 | 원 | 월할부금 ()회~()회 | 원 | 월할부금 ()회~()회 | 원 |
| 초회차 납입일 | 년 월 일 | | | | |
| 부가세 할부금융자금 ② | 부가세 할부금융이란 물건 내역의 차량가격(특장 제외)과 차량할부금융 자금액의 차액("선수금") 중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 | | | |
| 할부기간 | 원 | 총 개월 | 이자율 연 % | 중도상환수수료 원금잔액의 % | 만기일 년 월 일 |
| 총 개월 | 원 | 원 | 원 | 자면세상품(영양+3%, 법정최고리(2%이하)) 연 % | 상환방식 원금 만기 일시상환 <input type="checkbox"/> 원금 및 이자 만기 일시상환 <input type="checkbox"/> |
|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 1년 이상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x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율-1%)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으로 합니다. *30일 미만 상환시대출 사용시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무이자 상품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만기 1년 미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율)%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으로 합니다. *30일 미만 상환시대출 사용시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 | | | |
| 총 할부금융자금 ①+② | 원 | | 특약사항 | | |
| 담보내역 |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건설기계)근저당 <input type="checkbox"/> 부동산근저당 <input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구분 | <input type="checkbox"/> 공동대표 |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 <input type="checkbox"/> 대주주(30% 이상) |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 <input type="checkbox"/> 무한책임사원 | <input type="checkbox"/> 영업목적 차량 구입 | |
|--|---|-------------------------------|--------------------------------------|---|---------------------------------|-------------------------------------|----|
| *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 | | | | | | |
| 성명 |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신칭인과의 관계 | | | |
| 자택주소 | (-) | 전화번호 | | | | | |
| 직장(사업자)명 | 부서명 | 직위 | 재직(사업)기간 | 연소득/재산세 | 만원/ | 만원 | |
| 직장주소 | (-) | 직장전화번호 | | | | | |
| 보증채무최고액 | 원 | (* 보증채무최고액은 총 대출금액의 130%입니다.) | | | | 보증기간 | 개월 |
| 보증종류 | 특정근보증: 당해채무 (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 | | | <input type="checkbox"/> 특정근보증 <input type="checkbox"/> 한정근보증 | | | |
| 특이사항 | | | | | | | |

| 구분 | <input type="checkbox"/> 공동대표 |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 <input type="checkbox"/> 대주주(30% 이상) |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 <input type="checkbox"/> 무한책임사원 | <input type="checkbox"/> 영업목적 차량 구입 | |
|--|---|-------------------------------|--------------------------------------|---|---------------------------------|-------------------------------------|----|
| *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 | | | | | | |
| 성명 |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신칭인과의 관계 | | | |
| 자택주소 | (-) | 전화번호 | | | | | |
| 직장(사업자)명 | 부서명 | 직위 | 재직(사업)기간 | 연소득/재산세 | 만원/ | 만원 | |
| 직장주소 | (-) | 직장전화번호 | | | | | |
| 보증채무최고액 | 원 | (* 보증채무최고액은 총 대출금액의 130%입니다.) | | | | 보증기간 | 개월 |
| 보증종류 | 특정근보증: 당해채무 (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 | | | <input type="checkbox"/> 특정근보증 <input type="checkbox"/> 한정근보증 | | | |
|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금융회사(을)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 스퀘어 10층 대표이사 황계 안선 | | 채무자겸 본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을 확인함 | 판매직원 Finance Consultant | 서명 서명 |
|---------|--|--|------------------------------|----------------------------|----------|

| | |
|-------|--|
| 차량인수증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귀중 채무자겸 본인은 귀사와 체결한 할부금융 약정에 의거 약정서상의 차량 및 부가장비(특장)를 정히 인수합니다. 본인이 직접 인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인수 제반 절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인수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인수인: _____ (인) |
|-------|--|

할부금융 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 2019.00.0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차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 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4조 (거래조건외의 주의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선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제5조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원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 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 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제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황)

-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전여 할부금융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0조 (항변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 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4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별첨 1 자동차체약관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차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 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해당 계좌개설금융기관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겠습니다
5. 자동차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차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차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할부금융 약정서

2018. 04. 30 개정

대한민국정부
인 지 세
0,000 원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2014년15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귀중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할부금융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의 여신거대기본약관을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난 후 아래와 같이 자동차건설기계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 구분 | 제조사 / 판매사 | 물건명 (모델명) | 물건 가격 | 물건별 할부금융자금 |
|------|-----------|-----------|-------|------------|
| 차량 | | | 원 | 원 |
| 특장속 | | | 원 | 원 |
| 특장 1 | | | 원 | 원 |
| 특장 2 | | | 원 | 원 |
| 특장 3 | | | 원 | 원 |

| 구분 | 할부금융자금 | 이자율 | 할부기간 | 월할부금 | 유예금 | 상환방식 |
|-----------------|---|--|---------------|-------------------------------|-----|---|
| 차량 | 원 | 연 % | 총 개월 (거치: 개월) | 원 | 원 | 1.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2. 거치 후 원리금 균등 + 유예금 만기상환 <input type="checkbox"/> |
| 특장 | 원 | 연 % | 총 개월 (거치: 개월) | 원 | 원 | 1.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2. 거치 후 원리금 균등 + 유예금 만기상환 <input type="checkbox"/> |
| 물건할부금융총액 ① | 원 | 거치이자 납입방식 거치기간 매월납입 <input type="checkbox"/> 거치기간후 월할부금에서 우선납입 <input type="checkbox"/> | | 자면상환금(연이자율+3% 평형차고리(2%이하)) | 연 % | 구매자수수료 실제연간요율 |
| 월할부금 ()회~ ()회 | 원 | 월할부금 ()회~ ()회 | 원 | 월할부금 ()회~ ()회 | 원 | 초회차 납입일 년 월 일 |
| 부가세 할부금융자금 ② | 부가세 할부금융이란 물건 내역의 차량가격(특장 제외)과 차량할부금융 자금액의 차액("신수금") 중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 | | | | |
| 할부기간 | 원 | 총 개월 | 이자율 연 % | 중도상환수수료 원금잔액의 % | 만기일 | 년 월 일 |
| 총 개월 | 원 | 원 | 원 | 원 | 원 | 상환방식 원금 만기 일시상환 <input type="checkbox"/> 원금 및 이자 만기 일시상환 <input type="checkbox"/> |
|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 1년 이상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x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1%)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으로 합니다. *30일 미만 상환시 대출 사용 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무이자 상품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만기 1년 미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으로 합니다. *30일 미만 상환시 대출 사용 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 | | | | |
| 총 할부금융자금 ①+② | 원 | | 특약사항 | | | |
| 담보내역 |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건설기계근저당 <input type="checkbox"/> 부동산근저당 <input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구분 | <input type="checkbox"/> 공동대표 |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 <input type="checkbox"/> 대주주(30% 이상) |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 <input type="checkbox"/> 무한책임사원 | <input type="checkbox"/> 영업목적 차량 구입 |
|--|--|-------------------------------|--------------------------------------|---|---------------------------------|-------------------------------------|
| *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 | | | | | |
| 성명 |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과의 관계 | | |
| 자택주소 | (-) | | | 전화번호 | | |
| 직장(사업자)명 | 부서명 | 직위 | 재직(사업)기간 | 연소득/재산세 | 만원/ 만원 | |
| 직장주소 | (-) | | | 직장전화번호 | | |
| 보증채무최고액 | 원 (*보증채무최고액은 총 대출금액의 130%입니다.) | | | 보증기간 | 개월 | |
| 보증종류 | 특정근보증: 당해채무(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 | | | <input type="checkbox"/> 특정근보증 <input type="checkbox"/> 한정근보증 | | |
| 특이사항 | | | | | | |

| 구분 | <input type="checkbox"/> 공동대표 |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 <input type="checkbox"/> 대주주(30% 이상) |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 <input type="checkbox"/> 무한책임사원 | <input type="checkbox"/> 영업목적 차량 구입 |
|--|--|-------------------------------|--------------------------------------|---|---------------------------------|-------------------------------------|
| *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 | | | | | |
| 성명 |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과의 관계 | | |
| 자택주소 | (-) | | | 전화번호 | | |
| 직장(사업자)명 | 부서명 | 직위 | 재직(사업)기간 | 연소득/재산세 | 만원/ 만원 | |
| 직장주소 | (-) | | | 직장전화번호 | | |
| 보증채무최고액 | 원 (*보증채무최고액은 총 대출금액의 130%입니다.) | | | 보증기간 | 개월 | |
| 보증종류 | 특정근보증: 당해채무(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 | | | <input type="checkbox"/> 특정근보증 <input type="checkbox"/> 한정근보증 | | |
|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금융회사(을)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 스퀘어 10층 대표이사 황계안선 | | 채무자겸 본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을 확인함 | 판매직원 Finance Consultant | 서명 서명 |
|---------|---|--|------------------------------|----------------------------|----------|

| | |
|-------|--|
| 차량인수증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귀중 채무자겸 본인은 귀사와 체결한 할부금융 약정에 의거 약정서상의 차량 및 부가장비(특장)을 정히 인수합니다. 본인이 직접 인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인수 제반 절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인수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인수인: _____ (인) |
|-------|--|

할부금융 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 2019.00.0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차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 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4조 (거래조건외의 주의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선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제5조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원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 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 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통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제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황)

-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전액 할부금융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0조 (항변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 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갹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4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별첨 1 자동차체약관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차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 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해당 계좌개설금융기관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겠습니다
5. 자동차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차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약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차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할부금융 신청서

2016. 5. 1 개정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귀중

* 할부 이용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년 월 일

| 공 통 필 수 기 재 사 항 | |
|---|--|
| ※ 아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금융상품 이용 계약이 가능합니다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
| 자택주소 (실거주지) | (-) |
| 자택주소 (주민등록지) | (-) |
| ※ 대출용도가 사업자용인 경우 추가적으로 사업자정보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연월일 년 월 일 업태/종목 |
| 이메일 주소 | @ <input type="checkbox"/> 할부거래 청구서와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할부금의 변제방법 등 할부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메일로 전달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결제계좌 | 은행 계좌번호 (*본인명의 계좌에 한함) |
| 청구서 수령 | <input type="checkbox"/> 우편(<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 결제일 매월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 |
| 이 약정서 뒷면에 있는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승인하고 위와같이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합니다. 예금주: (인) | |
| ※ 아래의 정보 수집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한 구매권유(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게 기한이익상실 등 상품설명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아래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상품에 대한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출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추가설명 원함(<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층 <input type="checkbox"/> 은퇴자 <input type="checkbox"/> 주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추가설명 원치 않음 | |
| 상품별 필수 기재사항(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작성) | |
| ※ 대출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로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 |
| 직장(상호)명 | 부서명 직 위 재직(사업)기간 연소득 직종 |
| 직장주소 (-) | 직장전화번호 |

| 공 통 필 수 기 재 사 항 | |
|---|--|
| ※ 아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금융상품 이용 계약이 가능합니다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
| 사업장 주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 연월일 | 년 월 일 업 종 결제 방식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현금수납 |
| 이메일 주소 | @ <input type="checkbox"/> 할부거래 청구서와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할부금의 변제방법 등 할부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메일로 전달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small>*법인의 경우 계약(업무)담당자 이메일</small> |
| 결제계좌 | 은행 계좌번호 (*본인명의 계좌에 한함) |
| 청구서 수령 | <input type="checkbox"/> 우편(<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 결제일 매월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 |
| 이 약정서 뒷면에 있는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승인하고 위와같이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합니다. 예금주: (인) | |
| 법 인 업 무 담 당 자 기 재 사 항 | |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 |
| 법인계약(업무) 담당자성명 | 부서명 전화번호 |
| 선 택 기 재 사 항 | |
| ※ 아래 선택 기재사항은 할부금융상품 이용계약 체결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필요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정확한 한도 및 금리산정 등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신용평점 가점요인으로 작용하며 한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 |
| 고용형태 | <input type="checkbox"/> 정규 <input type="checkbox"/> 계약 <input type="checkbox"/> 파견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택소유현황 <input type="checkbox"/> 자택(본인명/배우자명/가족명)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 거주기간 년 개월 |
| 주택유형 |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고급빌라 <input type="checkbox"/> 연립/다세대/빌라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원룸 세대주구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단독 |
| 주요소득원 |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임대소득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input type="checkbox"/> 기타 |
| 2) 본인 결제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 |
| 은행명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신청인(본인)과의 관계 |
| 예금주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예금주 전화번호 |

| | | | |
|------|--|------|--|
| 금융회사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 스퀘어 10층 대표이사 힐게 안선 | 특약사항 | |
|------|--|------|--|

| | | | | |
|---------------------------|------|----|--------------------|----|
| 채무자겸 본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을 확인함 | 판매직원 | 서명 | Finance Consultant | 서명 |
|---------------------------|------|----|--------------------|----|

환 인 서

하기 본인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여신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회사로부터 계약의 이자율, 계약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각 수수료, 수수료율 및 부대비용,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 내용 및 철회권 행사에 따른 반환 등 절차(철회권 행사시 프로모션을 통해 회사가 차량 매매대금 또는 선수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전, 재화, 기타 일체의 혜택 등의 반환이 필요한 점), 기한 이익 상실 사유, 변동 금리 또는 고정 금리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 연체 이자율 및 연체이자 부과 사유, 높은 담보인정비율 및 대출 관련 담보가격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납입 요구 가능성 등 기타 불이익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위 사항들을 모두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고객확인 의무)에 따라 고객 정보, 문서자료 등을 수집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에 정한 바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께서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님의에 대한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제한 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성명 :

(서명/날인)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적용배제 안내

당사의 할부금융 상품은 고객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으로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철회권이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할부거래법 제8조)

◇ 항변권이란?

할부계약기간 중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할부거래법 제16조)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할부금융거래]

○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을 받는 거래

○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금융업무수탁자 작성란]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계약자)_____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고객 작성란]

_____ (으)로부터 (철회항변권 적용여부)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귀하가 금융업무수탁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신 경우 자필로 점선표 안에 얇게 인쇄된 부분을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일자 : _____ . _____ . _____

성명 : _____ (서명/날인)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 · 이용 동의서

※ 아래의 동의사항은 대출계약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1.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MBFSK")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MBFSK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MBFSK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 · 유지 · 이행 · 관리 · 개선(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 신청 상품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정산차량 구매에 따른 보험가입,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 조사,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공증, 채권추심, 거래제한대상(Sanction list)확인

• 수집 ·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음성data, 차량정보
- 2) 신용거래정보 :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3) 신용도정보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 · 해소 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4) 신용능력정보 : 재산 · 채무 ·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5) 공공기관정보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 · 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 · 공공요금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 · 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 6)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 · 유지 · 이행 · 관리 · 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이하에서는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에 해당하는 각각의 개별정보 명칭은 생략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거래 종료(채권 · 채무 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거래거절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 대출 신청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시 완전 파기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회기록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한 타 금융회사 등에 제공되지 않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귀하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타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 | |
|---------------|---|------|--|
| 본인성명 | 인 / 서명 | 생년월일 | |
| 연대보증인 1 성명 | 인 / 서명 고유식별정보 처리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생년월일 | |
| 연대보증인 2 성명 | 인 / 서명 고유식별정보 처리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생년월일 | |

2.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 기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등급, 신용조회, 채무재조정약정 정보 등)

• 조회 목적

계약의 체결 · 유지 · 이행 · 관리 · 개선-신용도 판단, 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및 사후관리, 통계분석 및 정책판단의 자료 활용, 신용 관련 모형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조회동의 효력기간

귀하가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거래 종료일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 | | |
|---------------|---|------|--|
| 본인성명 | 인 / 서명 | 생년월일 | |
| 연대보증인 1 성명 | 인 / 서명 고유식별정보 처리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생년월일 | |
| 연대보증인 2 성명 | 인 / 서명 고유식별정보 처리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생년월일 | |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 동의서

※ 아래의 동의사항은 대출계약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1.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구)전국은행연합회)
- 신용조회회사 : 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본인의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본 계약 및 본 계약 이전 발생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3)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 정보

4) 제공받는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약에 근거한 기간까지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업무처리 수탁업체 제공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 | | |
|--|--|--------------------------------------|---|
| 할 부 금 융 , 리 스 약 정 (차량수입사 및 딜러사)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성자동차(주) 더클래스호스팅(주), (주)모터원, 스타자동차(주), 중앙모터스(주), 경남자동차판매(주), 진모터스(주), 신성자동차(주), 케이씨씨오토(주), 교학모터스(주), 한성모터스(주), 다임러 트럭 코리아(주) 및 다임러 트럭 코리아의 각 지점 | 공 증 | 법무법인 양현, 법무법인 신한 |
| | | 송 무 업 무 대 행 | 법무법인 화담, 서울법무사합동사무소 |
| | | 채 권 추 심 | 에스엠 신용정보(주)(구 솔로몬 신용정보 주식회사) 중앙 신용정보 주식회사 |
| 고객 반환차량 의 인도/인수행위 정 산 금 액 안 내 및 상 담 업 무 | 리모코리아주식회사, (주)오토마트 | 근 저 당 해 지 업 무 | (주)오토클릭서비스 |
| 자동차 할부 · 리스 관련 업무수탁자 | FM (Finance Manager) / FA (Finance Assistant) / FC (Finance Consultant) / RC (Refinance consultant) | 법 률 자 문 / 소 송 대 리 | 법무법인 광장 (LEE & KO) |
| 중고차 할부약정/리스이용자 변경 업무 대행 | 디케이 모터스(주) | 소 유 권 이 전 , 자 동 차 등 록 관 련 업 무 대 행 | (주)오토클릭서비스 |
| 컨틴전시보험 (신차 보상 보험)/ 기업비용 보상 보험 (신차 보상 보험, 3-Care Plus Program, Good Driver Program)/잔존물회수보험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 보험)/CPM (Contractor's Plant Machinery Insurance), 수리비용보상보험 (타이어보상보험, Body Care Program) | 에이온코리아(주) JLT코리아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주) DB손해보험 | 회 계 감 사 자 문 | 삼정회계법인 |
| | | 원천세/부가세신고자료 | 한영회계법인 |
| | | 문 서 (계 약 서 등) 보 관 | 통인안전보관 |
| 고객안내문, 청구서발송대행 | 아림디엠(주) | 행 낭 서 비 스 | 성화기업택배 |
| 고객안내문 E - MAIL 발송대행 | 메이크빌 | 디 지 탈 에 이 전 시 | Commfunny |
| 문자서비스 (SMS / LMS) | (주) LG유플러스, 메이크빌 | P R 대 행 | Unicomm |
| 전 산 시 스템 유 지 및 운 영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 LG유플러스 조은 I&S Concur Technologies Australia Pty Ltd, SK Broadband 휴먼트리온, 웨인테크놀로지, 세틀뱅크 드림시큐리티인우기술, 데이터메이션 Chrysalis Solmotive Ltd., (주)케이티 | 웹 사 이 트 유 지 보 수 | 네오엠씨 |
| | | 퀵 서 비 스 | Gogovan Korea |
| | | 공 공 기 관 | 과태료 범칙금 관련기관 범죄행위 관련 수사 및 조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 고 객 만 족 도 조 사 | Qualtrics | 실적분석 · 보고 및 감사 | 다임러그룹 본사(Daimler AG) 및 지역본부 (Daimler South East Asia Pte. Ltd.) |
| 거래제한대상(Sanction list)확인 | 다임러그룹(Daimler AG) | | |
| 카드 포인트 지급용 | 신한카드 | | |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자서서류대행, 공동마케팅 비용정산, 차량 등 담보물관리/평가, 본인인증, 신청서 등 문서 관리(입력·스캔·보관·폐기), 우편물(명세서 등) 배송 및 반송, 전화상담, 전산처리 및 개발·유지·보수, 권원조사/권리조사, 신용조사/채권추심, 결제대금출금, 시은품·판촉물 발송, 법조치 업무, 법률자문, 녹취록 작성, 녹취서버 운영, SMS발송, 자동차 공매/이전/등록, 자동차 대출 제휴카드 발급, 자동차 구입·리콜·금리정산, 자동차 할부(대출) 중개·알선, 자동차 유지관리, 사고대차지급, 자동차 리스중개·알선 비용 및 수수료 정산, 리스반납 차량처리, 자동차보험 및 사고관리, 과태료/범칙금 처리, 범죄행위 관련 수사·조사 협조, 금융사고방지 등을 위한 공공기관 자료제출, 거래제한대상(Sanction list)확인, 선불카드포인트 지급, 실적분석·보고 및 감사, 공증, 근저당 해지업무, 회계감사자문, 세무, 고객만족도 조사

3)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계약 종료 시 또는 위탁업무 완료 시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3)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귀하의 채무관련 개인(신용)정보를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동의합니다.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 | | |
|--------------|---|------|--|
| 본인성명 | 인 / 서명 | 생년월일 | |
| 연대보증인1 성명 | 인 / 서명 고유식별정보 처리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생년월일 | |
| 연대보증인2 성명 | 인 / 서명 고유식별정보 처리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생년월일 | |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수집 · 이용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 · 서비스 소개 및 권유, 사은행사(경품, 사은품 제공 등), 판촉행사(특판관리 등)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1) 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 · 이용

동의 미동의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귀사 및 제휴사 상품 · 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시장조사 및 상품 · 서비스 연구개발

2)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a)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성별, 국적, 차량 정보(차종, 연식, 차대번호 등)
- b) 신용거래정보: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c) 거래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혹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 차량 계약 정보(차종, 계약 딜러사, 계약 전시장, 계약 직원 등), 금융 상품 정보(상품 종류, 계약 번호, 잔존가치, 월 납입금, 잔여원금 등), 선택 부가 서비스 정보(신차교환프로그램, 3-Care Plus, Good Driver Program, Body Care Program 등)

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계약 종료시까지

(2) 금융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 · 이용

동의 미동의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계약갱신 등 여신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한 마케팅활동

2)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a)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성별, 국적, 차량 정보(차종, 연식, 차대번호 등)
- b) 신용거래정보: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c) 거래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혹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 차량 계약 정보(차종, 계약 딜러사, 계약 전시장, 계약 직원 등), 금융 상품 정보(상품 종류, 계약 번호, 잔존가치, 월 납입금, 잔여원금 등), 선택 부가 서비스 정보(신차교환프로그램, 3-Care Plus, Good Driver Program, Body Care Program 등)

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계약 종료시까지

· 이용권유 방법

전부동의 (전화 문자메세지 서면 이메일) 동의하지 않음

고객님께서 동의하시면 당사가 제공하는 유익한 서비스나 제휴혜택 등을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연락에 대한 중단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577-2320 / 홈페이지: www.mercedes-benz-financial.co.kr)

※ 상품 변경 안내 등 필수 고지사항은 상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 | | |
|------|--------|------|
| 본인성명 | 인 / 서명 | 생년월일 |
|------|--------|------|

2.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공에 관한 사항

(1) 자동차 수입사, 판매사 및 재금융 컨설턴트(Refinance Consultant)에게 공동 마케팅을 위하여 제공

동의 미동의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한성자동차(주), 더클래스호성(주), (주)모터원, 스타자동차(주), 중앙모터스(주), 경남자동차판매(주), 진모터스, 신성자동차(주), 케이씨씨오토(주), 교학모터스주식회사, 한성모터스(주), 다임러 트럭 코리아(주), 디케이모터스(주) 및 각사 소속 영업직원, Chrysalis Solmotive Ltd, 재금융 컨설턴트(Refinance Consultant), 다임러그룹 본사(Daimler AG) 및 지역본부(Daimler South East Asia Pte. Ltd.),

2)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관련 편의제공(사은품 할인쿠폰 제공 등),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회원유치, 서비스 이용 권유 등
- 제휴 업체의 마케팅 목적, 심사목적, 부가서비스 개발, 고객관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전화 또는 FAX를 통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제공
- 새로운 상거래 설정을 위한 청약, 부가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제공
- 귀사가 영위하는 아래 업무를 귀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 또는 외부업체(제휴업체와위탁계약을 체결한 외부업체 포함)가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 마케팅 목적의 우편물, SMS, e-mail 발송, 전화권유판매, 시장조사 research 업무, 상품 서비스 소개 및 이용 권유 업무 등

3)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 이용 동의서에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 a)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성별, 국적, 차량 정보(차종, 연식, 차대번호 등)
- b) 신용거래정보: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c) 거래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혹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 차량 계약 정보(차종, 계약 딜러사, 계약 전시장, 계약 직원 등), 금융 상품 정보(상품 종류, 계약 번호, 잔존가치, 월 납입금, 잔여원금 등), 선택 부가 서비스 정보(신차교환프로그램, 3-Care Plus, Good Driver Program, Body Care Program 등)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2)년까지

(2)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제휴 보험사에 제공

동의 미동의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에이온코리아(주) 및 보험회사(메리츠 화재(주) / 삼성화재(주) / DB손해보험 / AXA손해보험, JLT코리아)

2)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보험 가입 안내, 보험상품과 연계된 제휴금융상품이용에 따른 공동마케팅,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 보험사 광고

3)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계약전시장, 계약직원명, 계약직원연락처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2)년까지

년 월 일

| | | |
|------|--------|------|
| 본인성명 | 인 / 서명 | 생년월일 |
|------|--------|------|

동 의 서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 귀중

- 아래 서명한 본인 (이하 "고객")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 (이하 "회사")의 할부금융상품을 이용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매월 상환하는 월할부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 금액 및 방법에 대하여 회사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아래 서명 날인으로써 확인합니다.

| | |
|---------|---|
| 상 환 방 식 | 거치상환 |
| 주 요 내 용 | 1. 거치 기간 동안의 이자는, 거치기간 종료 후 월할부금에서 우선 납입 처리됨 2. 월할부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납입처리 기준 가. 거치 기간의 이자 -> 당월 이자 -> 당월 원금의 순서로 납입처리됨. 나. 거치 기간의 이자는 거치 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한 불입금에 대하여 발생 (별첨 1의 예시 참조) 다. 연체 시는 연체 이자부터 우선 납입처리 됨. |

년 월 일

| | |
|---|--|
| 채무자 겸 본인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연대보증인 1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 연대보증인 2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연대보증인 3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별 첨 1

상환스케줄 예시

- 할부 원금 150,000,000 원 (금리 연9.69%)
 기간 60개월 4거치
- 거치이자는 월불입금에 대하여 **4개월간 4,904,000원** 발생
 - 5회차 상환 시 30일 초과 경과이자(15일 경우) 605,625원 포함

60개월 무거치 상환 스케줄

| | 원금상환 | 이자상환 | 월 불입금 | 발생 이 자 | 미회수원금 |
|----|-----------|----------------------|----------------------|-----------|-------------|
| 1 | 1,952,970 | 1,211,250 (+605,625) | 3,164,220 (+605,625) | 1,211,250 | 148,047,030 |
| 2 | 1,968,740 | 1,195,480 | 3,164,220 | 1,195,480 | 146,078,290 |
| 3 | 1,984,638 | 1,179,582 | 3,164,220 | 1,179,580 | 144,093,652 |
| 4 | 2,000,664 | 1,163,556 | 3,164,220 | 1,163,560 | 142,092,988 |
| 5 | 2,016,819 | 1,147,401 | 3,164,220 | 1,147,400 | 140,076,169 |
| 6 | 2,033,105 | 1,131,115 | 3,164,220 | 1,131,120 | 138,043,064 |
| 7 | 2,049,522 | 1,114,698 | 3,164,220 | 1,114,700 | 135,993,542 |
| 8 | 2,066,072 | 1,098,148 | 3,164,220 | 1,098,150 | 133,927,470 |
| 9 | 2,082,756 | 1,081,464 | 3,164,220 | 1,081,460 | 131,844,714 |
| 10 | 2,099,574 | 1,064,646 | 3,164,220 | 1,064,650 | 129,745,140 |
| 11 | 2,116,528 | 1,047,692 | 3,164,220 | 1,047,690 | 127,628,612 |
| 12 | 2,133,619 | 1,030,601 | 3,164,220 | 1,030,600 | 125,494,993 |

64개월 4거치 상환 스케줄

| | 원금상환 | 이자상환 | 월 불입금 | 발생 이 자 | 미회수원금 |
|----|-----------|----------------------|----------------------|-----------|-------------|
| 1 | | | | 1,211,250 | 150,000,000 |
| 2 | | | | 1,221,030 | 150,000,000 |
| 3 | | | | 1,230,890 | 150,000,000 |
| 4 | | | | 1,240,830 | 150,000,000 |
| 5 | | 3,267,670 (+605,625) | 3,267,670 (+605,625) | 1,250,850 | 150,000,000 |
| 6 | | 3,267,670 | 3,267,670 | 1,234,560 | 150,000,000 |
| 7 | 1,195,450 | 2,072,220 | 3,267,670 | 1,218,150 | 148,804,550 |
| 8 | 2,066,070 | 1,201,600 | 3,267,670 | 1,201,600 | 146,738,480 |
| 9 | 2,082,760 | 1,184,910 | 3,267,670 | 1,184,910 | 144,655,720 |
| 10 | 2,099,580 | 1,168,090 | 3,267,670 | 1,168,090 | 142,556,140 |
| 11 | 2,116,530 | 1,151,140 | 3,267,670 | 1,151,140 | 140,439,610 |
| 12 | 2,133,620 | 1,134,050 | 3,267,670 | 1,134,050 | 138,305,990 |

공증위임장 / 약속어음

| 공 증 위 임 장 | | | | | |
|--|-------|------|---------|-----------------------------|-------|
| 수임인 (대리인) | 주소 | | | | |
| | 성명 | | | | |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_____ 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 2 (어음, 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 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 및 집행문부여 신청,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행위를 승낙함) - 첨부서류 : 위임인 인감증명서 각각 1통 | | | | | |
| 액 면 | 금 | 원정 | 수취인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 |
| 발행일 | | 지급기일 | 일 램 출 급 | 발행인 | |
| 발행지 | 서울특별시 | 지급지 | 서울특별시 |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
| 년 월 일 | | | | | |
| 위임인 | 주소 | | | 주소 | |
| | 성명 | (인) | | 성명 | (인) |
| 위임인 | 주소 | | | 주소 | |
| | 성명 | (인) | | 성명 | (인) |

| 약 속 어 음 | | | | | |
|---|------------------------------|-----|-------|-------|-----|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귀중 | | | | | |
| 금 | _____ 원정 | 주소 | _____ | _____ | (인) |
| | ₩ _____ | 발행인 | _____ | _____ | (인) |
|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 | | | |
| 발행일 | _____ 년 월 일 | 주소 | _____ | _____ | (인) |
| 지급기일 | _____ 일 램 출 급 | 주소 | _____ | _____ | (인) |
| 발행지 | _____ 서울특별시 | 발행인 | _____ | _____ | (인) |
| 지급지 | _____ 서울특별시 | 주소 | _____ | _____ | (인) |
| 지급장소 | _____ 서울특별시 | 발행인 | _____ | _____ | (인) |

자동차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신청서


접 수 번 호

*

처 리 기 간

즉 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
|---------------------|---|----|-----------|--|---|
| 자동차 / 건설기계 등록번호 | | | | 을부번호 | * |
| 저 당 종 류 | <input type="checkbox"/> 단독저당 <input type="checkbox"/> 공동저당 <input type="checkbox"/> 추가공동저당 <input type="checkbox"/> 일부저당말소 | | | | |
| 저 당 권 자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 스퀘어 10층 대표이사 힐케 안센 | | |  | |
|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자 | 성명(명칭) | | | | |
| | 주 소 | | | | |
| 채무자 | 성명(명칭) | | | | |
| | 주 소 | | | | |
| 채 권 의 가 액 | 금 | 원정 | 변 제 기 한 | 년 월 일 | |
| | (₩ |) | | | |
| 이 자 액 | | | 이 자 지 급 일 | | |
| 조건 또는 약정 | | | 차 량 대 수 | 대 | |
| 이전 · 변경사항 | 변경 · 이전 전 | | | 변경 · 이전 후 | |
| | | | | | |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 말소 이전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 스퀘어 10층

대표이사 힐케 안센

법인등록번호 : 110111-2614786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 말소 · 이전 ·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자동차 / 건설기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 설정 ·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자동차 / 건설기계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 설정 · 말소 ·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저당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 저당권해지증서 (저당권 말소의 경우에 한한다)
- 제권판결등본 (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수 수 료

수입증지

설정(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말소(변경)

: 대당 1,000원

위 임 장

성 명 :

수입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상기인에게 아래 목록 기재 자동차(건설기계)의 근저당권 (설정 · 말소)등록신청에 관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채 권 자 검 상 호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근저당권자 주 소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 스퀘어 10층
 성 명 : 대표이사 힐케 안센



채 무 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근 저 당 권 상 호 :
 설 정 자 주 소 :
 성 명 :



신 청 인 상 호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주 소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 스퀘어 10층
 성 명 : 대표이사 힐케 안센






[목 록]

| 차 (건설기계) 명 | 형 식 | 등 록 번 호 | 차 대 번 호 | 원 동 기 형 식 | 사 용 본 거 지 |
|------------|-----|---------|---------|-----------|-----------|
| | | | | | |

자동차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 2016.03.25

| | | |
|---------------------------------------|--|---|
|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이하 "갑"이라 칭합니다)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 스퀘어 10층 대표이사 힐케 안센 |  |
| 채무자 (이하 "을"이라 칭합니다) | 성명 _____ 주소 _____ |  |
| 근저당권설정자 (이하 "을"이라 칭합니다) | 성명 _____ 주소 _____ |  |
| 채권최고액 | 금 _____ 원정(W _____) | |

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 ①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목적 기재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에 순위 제 1번의 채권 최고금액 _____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 계약 20 년 월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채무 포함)
- ②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 및 충돌에도 미칩니다.
- ③근저당물건의 실체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2조) 담보보존의무 및 담보가치유지

- ①소유자는 회사의 승락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 해제, 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 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
- ③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감소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본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여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배상금, 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 수령하여 변제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제3조) 담보가치유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 관리

- ①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 시기 · 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 ②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③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 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 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

- ①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 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말소(해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③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행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을 행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저당물건의 조사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행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담보, 보증약정과 관계

- ①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으로 적용됩니다.
-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년 월 일

[목 록]

| 차(건설기계)명 | 형 식 | 차 대 번 호 | 원 동 기 번 호 | 등 록 번 호 | 사 용 본 거 지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자동차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 2016.03.25

| | | |
|---|--|---|
| 채 권 자 겸 근저당권자 (이하 "갑"이라 칭합니다)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 스퀘어 10층 대표이사 힐케 안센 |  |
| 채 무 자 (이하 "을"이라 칭합니다) | 성 명 _____ 주 소 _____ |  |
| 근저당권설정자 (이하 "을"이라 칭합니다) | 성 명 _____ 주 소 _____ |  |
| 채 권 최 고 액 | 금 _____ 원정(w _____) | |

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 ①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혹목 기재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에 순위 제 1번의 채권 최고금액 _____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 계약 20 년 월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채채무 포함)
- ②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 및 중물에도 미칩니다.
- ③근저당물건의 실체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2조) 담보보존의무 및 담보가치유지

- ①소유자는 회사의 승락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 해제, 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 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
- ③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감소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본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여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배상금, 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 수령하여 변제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제3조) 담보가치유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 관리

- ①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 ②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③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 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 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

- ①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 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말소(해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③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행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을 행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저당물건의 조사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행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담보, 보증약정과 관계

- ①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년 월 일

[목 록]

| 차(건설기계)명 | 형 식 | 차 대 번 호 | 원 동 기 번 호 | 등 록 번 호 | 사 용 본 거 지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제8조 제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통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권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인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보증인에게는 보증계약의 내용이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권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의2(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 안내) 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문 문자메시지로 철회·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예시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여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 어음의 할인일 때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원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로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일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로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제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약속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제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할금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할금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할금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러 만기일까지의 할인로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채무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제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제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 제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도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며,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통보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교부)

-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대하여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할금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할금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항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 교통·통신의 두절, 통신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고자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나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할금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잔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잔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몰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특별법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당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잔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칭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칭하는 순서에 따라 채무자의 채권보존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몰수담보나 보증금, 유류,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정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특별법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잔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칭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 채무자가 제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존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면책조항)

-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증서 등이 불발형·사변·재해·수송중동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징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징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할 후 갚기로 합니다.
- 채무자는 제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필요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면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변경 등)

-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은 서면으로 신고한다.
- 제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변경의 내용을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상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예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계속할 함으로 말미암아 제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중정무 내용중정무면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서류를 보존하고 그 사실의 사실 및 연할일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 채무자 또는 그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유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징부·공정·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 금융회사는 제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치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존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MAIL), 문면메시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예선한다. 예선한日,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제항에 의하여 예선한다·예선민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한다. 예선한日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신용상태가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제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4조 (이행장소·준거법)

- 채무자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분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분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들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타침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서,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서, 이를 알려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제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제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 이 약관에 타침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분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할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분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